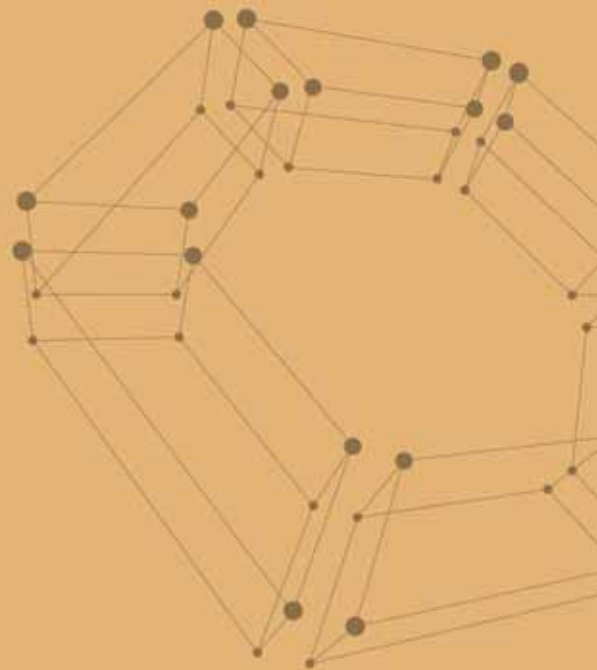


제 4 부

언론중재위원회 관련 법률 개정 의견



제 1 장

언론중재위원회 언론중재법 개정안

최근의 미디어 환경은 디지털 중심으로 급속도로 재편되고 있으며, 인터넷 미디어의 영향력은 갈수록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일부 잘못된 기사가 블로그나 카페 등을 통해 신속히 전파되고 있으며, 명백히 허위 내용을 포함한 묵은 기사가 인터넷에 남아 있는 등 새로운 유형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위원회는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 부합하는 언론피해구제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마련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신·구조문 대비표는 다음과 같다.

1. 언론중재법 개정안 마련 경과

● 2014. ~

잘못된 원 보도의 복제기사 또는 기사댓글 및 검색으로 인한 피해 구제요청 사례 발생, 관련 구제방안 검토 시작

● 2014. 10.

여야 의원들, 인터넷 매체 환경에 부합하는 언론중재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 국정감사 시 지적

- 뉴스펀딩 등 뉴미디어로 인한 피해 대책 마련(박대출 의원)
- 수정이나 삭제 등 피해구제가 이루어졌으나 원 보도가 인터넷에 전파되어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대책 마련 촉구(박창식 의원)
- 인터넷 매체 환경에 부합할 수 있도록 피해구제방법 등 언론중재법 개정 필요(박혜자 의원)
- 인터넷 매체에 대한 정정보도 등이 피해구제에 미흡하므로 이에 대한 실효성 제고 필요(이상일 의원)

● 2014. 12. 4.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의 새로운 피해구제 방안에 관한 정책심포지엄 개최

- 주 제 : 인터넷 공간의 잘못된 기사와 새로운 피해구제 방안
- 사회자 : 양승목(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 발표자 : 김경환(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
- 토론자 : 박정호(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심석태(SBS 뉴미디어 부장)
 이준희(한국인터넷기자협회 수석부회장)
 정혜승(다음카카오 정책파트장)

● 2015. 1.

2015년 위원회 중점과제로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 부합하는 위원회 역할 정립” 설정

● 2015. 3. ~ 10.

총 8차례에 걸쳐 위원장 주재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사무처 내부 토론회 진행

- 조정대상을 복제기사 및 댓글까지 확대하는 것에 대한 검토(1차)
- 정보통신망 상의 인격권에 기한 침해배제청구권 도입 검토(2차)
- 검색에 의한 피해구제방안 검토(3차)
- 게시자의 이의절차를 명문화하고 법원에 불복·제소하는 절차를 규정하는 방안 검토(4차)
- 신생 뉴스플랫폼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유사 뉴스서비스 전자간행물’의 개념을 도입하는 방안 검토(5차)
- 언론사 등 피신청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침해배제청구권의 조정신청 기간을 제한하는 방안 검토(6차)

● 2015. 5. 28.

서울중재부장 간담회 개최

- 참석자 : 김용관(서울 제1중재부장), 강태훈(서울 제2중재부장), 이태수(서울 제4중재부장), 이은신(서울 제6중재부장), 오재성(서울 제7중재부장)

● 2015. 6.

법조계, 학계, 언론계 등 각계 전문가(8명) 자문 의견 수렴

- 양경승(사법연수원 교수), 양철한(수원지법 부장판사), 김경환(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 김재형(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구본권(한겨레신문 사람과 디지털 연구소장), 유봉석(네이버 뉴스플랫폼센터장), 김유향(국회입법조사처 과학방송통신팀장), 이승선(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 2015. 8. 20.

언론인 등 초청, 개정 언론중재법에 관한 세미나 개최

- 주 제 : 디지털 시대, 언론중재제도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 사회자 : 박성희(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교수)
- 발표자 : 양경승(사법연수원 교수)
- 토론자 : 구본권(한겨레신문 사람과 디지털 연구소장)
김경환(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
김동규(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유봉석(네이버 미디어플랫폼센터장)
윤성욱(경기대 언론미디어학과 교수)

● 2015. 9.

국정감사 시, 복제기사 및 댓글에 대한 피해구제 대책 마련 촉구

- 잘못된 보도의 전파에 대한 피해구제 대책 마련(박창식, 윤재옥 의원)
- 위법한 복제기사 및 기사댓글에 대한 구제방안 마련(한선교 의원)

● 2015. 10. 13.

언론중재법 개정안 쟁점과 해설에 관한 정책토론회 개최(개정안 최초 공개)

- 후 원 : 신성범 국회의원(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 주 제 : 디지털미디어 시대의 새로운 언론피해구제제도
 - 언론중재법 개정안 쟁점과 해설 -
- 사회자 : 이상원(서울대 법과대학 교수)

- 토론자 : 김은태(네이버 법무실 부장)
 윤영철(연세대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
 이병선(카카오 CR팀 이사)
 조현욱(법무법인 도움 대표변호사)
 조형래(조선일보 디지털뉴스본부 취재팀장)

2. 제안이유

인터넷의 등장과 발전은 미디어 환경에도 급격한 변화를 가져왔다. 인터넷의 편리함과 신속성으로 인해 인터넷을 통해 다양하고 풍부한 뉴스가 제공되고 있으며, 인터넷 미디어의 영향력은 갈수록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의 특성인 신속성, 파급성, 기록성 등으로 인터넷 기사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명백히 허위 내용을 포함한 묵은 기사가 인터넷에 남아 있으며, 일부 잘못된 기사도 블로그나 카페 등의 사이트에 복제·전파되어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다.

하지만 현행 언론피해구제법제는 아날로그 시대에 오프라인 미디어를 대상으로 제정, 발전되어 왔기 때문에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시대에 적절한 피해구제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즉, 현행 언론중재법은 전통적인 구제수단인 정정보도·반론보도 등만을 규정하고 있고, 인터넷 기사에 대한 삭제·보완을 위한 권리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기사댓글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나 그 구제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 부합하는 언론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사의 삭제·수정·보완 등을 포괄하는 침해배제청구권을 도입하고 기사댓글로 인한 피해도 구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이를 언론보도로 인한 제반 분쟁을 조정·중재하는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일괄 처리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3. 주요내용

- 가. 언론보도는 사실적 주장뿐만 아니라 개인적 법익을 침해할 수 있는 모든 미디어 활동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되어야 하므로, 사실적 주장에 한정된 기존의 언론보도 정의를 확대하였다. (안 제2조제15호)
- 나. ‘정보통신망 상의 인격권에 기한 침해배제청구권’, ‘정보통신망을 통해 확산되는 보도 피해의 구제’ 조항의 신설과 관련하여 정보통신망, 검색, 검색사업자, 게시판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였다. (안 제2조제22호~제25호 신설)

다. 사회상규나 피해자의 동의는 법에 규정됨으로써 창설되는 효력을 갖는 개념이 아니라, 이미 법리상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다. 또한, 진실의 항변 및 상당성 항변은 명예훼손에만 적용되는 위법성 조각사유일 뿐, 기타 인격권 침해에서는 항변이 될 수 없다. 이에 언론등의 면책을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였다. (안 제5조제2항 삭제)

라. 정보통신망 상의 인격권에 기한 침해배제청구권(안 제17조의3 신설)

- 1) 정보통신망에 의해 언론보도등으로 인하여 위법하게 명예 등 인격권 그 밖의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피해자)는 그 침해를 야기하거나 침해상태를 관리하는 자를 상대로 ‘보도 내용이 허위이고 피해자의 인격권 등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경우’, ‘보도 내용 자체에서 보아 사생활의 핵심영역을 침해함이 명백한 경우’, ‘기타 보도가 피해자의 인격권 그 밖의 권리를 계속적으로 중대하게 침해하여 이를 방치하면 형평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 하나를 증명하여 계속된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침해의 배제나 피해 확산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 2) 피해자는 1)의 인격권 침해 기사가 정보통신망에 전파·확산된 경우 해당 언론사 등에게 그 삭제 등 권리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에 협조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3) 보도가 사후의 사정변경에 의해 현저히 부정확한 것으로 판명되어 인격권 등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경우 피해자는 관련 언론사 등에게 변경된 사정에 따라 해당 보도의 내용을 수정·보완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 4) 피해자는 인격권에 기한 침해배제청구권에 관하여 해당 사유를 안 후 1년 이내에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 또는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마. 정보통신망을 통해 확산되는 보도 피해의 구제(안 제18조의2 신설)

- 1) 위법한 기사댓글로 피해를 본 경우 피해자는 댓글 게시판을 운영하는 언론사 등을 상대로 해당 댓글의 말소 등 권리보호에 필요한 조치에 관하여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조정을 통해 조정성립이나 직권조정결정 등이 이루어진 경우 언론사 등은 접근차단 등 피해 확산의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에 대해서 게시자는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2) 조정이나 중재, 판결 등으로 피해구제된 기사가 블로그나 카페 등의 사이트에 복제·전파된 경우 피해자는 사이트 관리자 등을 상대로 그 게시물의 삭제, 정정 또는 반론 게재 등 필요한 구제를 위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신청이 이유 있는 경우 직권조정안을 작성하여 통지할 수 있으며, 사이트 관리자 등은 접근차단 등 피해 확

산의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에 대해서 게시자는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3) 조정이나 중재, 판결 등으로 피해구제된 기사가 검색 결과에 나타날 경우 피해자는 검색사업자에게 링크삭제나 검색결과가 표시되지 않게 하는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조정이나 중재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4)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뉴스서비스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인터넷신문이나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 또는 시사에 관한 정보·논평 및 여론을 이동통신서비스 기타 방식에 의해 계속적·상시적으로 일반에게 제공하는 전자간행물(‘유사 뉴스서비스 전자간행물’)에 의해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의 구제신청을 접수한 경우 이 법에 의한 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바. 소송과 관련하여 제17조의3 및 제18조의2 규정은 조정절차에 특수한 사항을 제외하고 법원의 소송절차에 준용하도록 하였다. (안 제31조의2 신설)

4.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법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14. (생략)</p> <p>15. “언론보도”란 언론의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를 말한다.</p> <p>16. ~ 21. (생략)</p> <p>〈신설〉</p> <p>〈신설〉</p> <p>〈신설〉</p> <p>〈신설〉</p>	<p>제2조(정의) ----- ----- 1. ~ 14. (현행과 같음)</p> <p>15. “언론보도”란 언론이 전달의 형태나 수단 여하에 불구하고 공공에게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활동을 말한다.</p> <p>16. ~ 21. (현행과 같음)</p> <p>22. “정보통신망”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p> <p>23. “검색”이란 정보통신망에서 이용자가 원하는 특정 정보에 부합하는 정보를 찾아 이를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여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를 말한다.</p> <p>24. “검색사업자”란 제23호의 검색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p> <p>25. “게시판”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9호의 게시판을 말한다.</p>
<p>제5조(언론등에 의한 피해구제의 원칙) ① (생략)</p> <p>② 인격권 침해가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반하지</p>	<p>제5조(언론등에 의한 피해구제의 원칙) ① (현행과 같음)</p> <p>〈삭제〉</p>

현 행	개 정 안
<p>아니하는 한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언론등은 그 보도 내용과 관련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이루어진 경우 2. 언론등의 보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진실한 것이거나 진실하다고 믿는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p>제 7 조(언론중재위원회의 설치) ① 언론등의 보도 또는 매개(이하 “언론보도등”이라 한다)로 인한 분쟁의 조정·중재 및 침해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중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 ⑩ (생략)</p> <p>제17조의2(인터넷뉴스서비스에 대한 특칙) ①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정정보도 청구, 제16조제1항에 따른 반론보도 청구 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추후보도 청구(이하 “정정보도청구등”이라 한다)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해당 기사에 관하여 정정보도청구등이 있음을 알리는 표시를 하고 해당 기사를 제공한 언론사 등(이하 “기사제공언론사”라 한다)에 그 청구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p> <p>②·③ (생략)</p> <p>〈신설〉</p>	<p>제 7 조(언론중재위원회의 설치) ① ----- 보도 그 전파나 매개 또는 검색(이하 “언론보도등”이라 한다)으로-----</p> <p>-----.</p> <p>② ~ ⑩ (현행과 같음)</p> <p>제17조의2(인터넷뉴스서비스에 대한 특칙) ① -----</p> <p>----- 청구, 제17조제1항에 따른 추후보도 청구 또는 제17조의3에 따른 침해배제 청구(이하 “정정보도청구등”이라 한다)를-----</p> <p>-----.</p> <p>②·③ (현행과 같음)</p> <p>제17조의3(정보통신망 상의 인격권에 기한 침해배제청구권) ① 정보통신망에 의해 언론보도등으로 인하여 위법하게 명예 등 인격권 그 밖의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이하 본조 및 제18조의2에서 “피해자”라 한다)는 그 침해를 야기하거나 침해상태를 관리하는 자를 상대로 다음 각 호의 하나를 증명하여 계속된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침해의 배제나 피해 확산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도 내용이 허위이고 피해자의 인격권 등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경우 2. 보도 내용 자체에서 보아 사생활의 핵심영역을 침해함이 명백한 경우 3. 기타 보도가 피해자의 인격권 그 밖의 권리를 계속적으로 중대하게 침해하여 이를 방지하면 행명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p>② 피해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사가 정보통신망에 전파·확산된 경우 해당 언론사 등에게 그 삭제 등 권리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에 협조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p> <p>③ 언론보도가 사후의 사정변경에 의해 현저히 부정확한 것으로 판명되어 인격권 등 권리를 중</p>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대하게 침해하는 경우 피해자는 관련 언론사 등에게 변경된 사정에 따라 해당 보도의 내용을 수정·보완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p> <p>④ 피해자는 이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신청과 함께 또는 별도로 제1항 및 제3항의 권리에 관하여 중재위원회에 조정 또는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가 제1항 각 호 및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를 안 후 1년이 경과하면 중재위원회에 조정·중재를 신청할 수 없다.</p> <p>⑤ 제1항 및 제3항의 권리 행사에 관하여는 이 법 제14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p> <p>제18조의2(정보통신망을 통해 확산되는 보도 피해의 구제) ① 피해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되는 보도에 관하여 독자 등의 글(음성, 영상, 기타 메시지와 다른 사이트에 링크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댓글”이라 한다)의 게시를 허용하는 게시판 등을 운영하는 언론사 등을 상대로 피해자의 인격권 등 권리를 위법하게 침해하는 댓글의 삭제 등 피해자의 권리보호에 필요한 조치에 관하여 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피해구제신청에 관해 조정이 성립하거나 직권조정결정이 내려진 경우 해당 댓글, 게시판 등을 운영하는 언론사,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는 자체 없이 위 조정결정 등의 내용을 댓글 게시자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당 사이트나 게시판에 게시하고 접근차단 등 피해 확산의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③ 피해자는 이 법 제23조, 제25조 또는 제27조에 의해 삭제, 정정 등 구제가 확정된 것(중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제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을 포함한다)과 동일한 보도 내용이 정보통신망에 복제·전파된 경우 그 복제·전파된 게시물이 소재하는 인터넷 공간의 관리자(이하 “사이트 관리자”라 한다) 등을 상대로 그 게시물의 삭제, 정정 또는 반론 게재 등 필요한 구제를 위해 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p> <p>④ 중재위원회는 제3항의 신청이 이유 있는 경우 복제·전파된 보도 내용이 게시된 사이트 관리자 등에게 이 법 제23조의 합의사항 및 조정결정(본조 제3항의 중재위원회규칙에 의해 구제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을 포함한다), 법 제25조의 중재결정 또는 법 제27조에 의한 재판의 결과를 통지하고, 그 결정 등의 취지에 따라 복제·전파된 해당 게시물의 삭제 기타 피해자의 권리보호에 필요한 조치에 관해 직권조정안을 작</p>

현 행	개 정 안
	<p>성하여 통지할 수 있다. 사이트 관리자 등은 지체 없이 중재위원회로부터 통지받은 위 각 결정 등의 결과 및 직권조정안을 게시자 등이 쉽게 인지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으로 해당 사이트 등에 게시하고, 7일 내에 적법한 이의가 없으면 직권조정안의 취지에 따라 처리됨을 알려야 하며, 지체 없이 접근차단 등 피해 확산의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⑤ 제1항의 침해적 댓글의 게시자 또는 제3항의 위법한 보도 기사를 복제·전파한 게시자는 중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을 특정하여 제2항의 조정 결과 또는 제4항의 직권조정안이 해당 사이트나 게시판에 게시된 후 7일 이내에 중재위원회에 이의할 수 있다. 중재위원회는 게시자 등의 이의가 이유 있는 경우 이미 내린 해당 조정합의나 조정결정 또는 직권조정안을 취소한다. 게시자 등의 이의에 대한 중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타방 당사자를 상대로 10일 이내에 법원에 제소할 수 있고, 제소가 있는 경우 중재위원회의 해당 조정합의나 조정결정 또는 직권조정안은 제소자와의 관계에서 그 효력을 상실한다. 이의 기간 내에 적법한 이의가 없거나, 이의에 대한 중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소정 기간 내에 제소가 없는 경우 해당 조정합의나 조정결정 또는 직권조정안은 확정되고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는다. 분항에 정한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이의 있는 게시자는 사이트 관리자 등이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게시한 사항을 인지하지 못하였음을 증명하여 인지일 후 분항이 규정하는 소정 기간 내에 이의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p> <p>⑥ 피해자는 이 법 제23조 제25조 또는 제27조에 의해 삭제·정정 등 구제가 이루어진 결정 등(중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제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을 포함한다) 또는 법원의 재판을 검색사업자에게 제시하고, 위 결정 등의 취지에 따라 검색 결과에서 당해 보도 및 그에 달린 댓글 또는 그 동일한 내용의 복제·전파물의 링크를 삭제하거나 기타 권리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검색사업자는 위 피해자의 청구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위 조정결정 등의 취지에 따라 피해자의 권리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중재위원회는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분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자의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에 관해 조정을 행한다. 중재위원회는 검색사업자 등의 의견을 들은 후 분항의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중재위원회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p>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⑦ 언론사,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 검색사업자, 게시판 또는 사이트 관리운영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은 본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한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책임을 면한다.</p> <p>⑧ 본조는 제7항에 규정된 사업자 등이 피해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이미 시행 중인 자율 규제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며, 제7항에 규정된 사업자 등은 본조의 규정에 의해 피해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요구되는 절차적 사항에 관해 협조하여야 한다.</p> <p>⑨ 본조가 규정하는 각종 문서나 결정은 중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로 갈음할 수 있고, 본조가 규정하는 각종 통지, 송달 기타 의사표시의 전달은 전자적 방법에 의할 수 있다.</p> <p>⑩ 피해자는 제1항의 위법한 침해적 댓글 또는 제3항의 위법한 침해적 보도의 복제·전파 게시물이 존재함을 안 후 1년이 경과하면 그로 인한 피해구제를 위해 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p> <p>⑪ 본조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처리절차는 중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p> <p>⑫ 중재위원회는 이 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간행물로서 인터넷신문이나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 또는 시사에 관한 정보·논평 및 여론을 이동통신서비스 기타 방식에 의해 계속적·상시적으로 일반에게 제공하는 전자간행물(“유사 뉴스서비스 전자간행물”)에 의해 피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의 구제신청을 접수한 경우 이 법에 의한 구제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p> <p>제31조의2(정보통신망에 의한 피해구제에 관한 준용) 제17조의3 및 제18조의2의 규정은 조정절차에 특수한 사항을 제외하고 법원의 소송절차에 준용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p> <p>제 1 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 2 조(시행 전 언론보도등의 검색에 관한 경과조치) 제18조의2제6항은 이 법 시행 전에 행하여진 언론보도 및 그에 대한 댓글 또는 그와 동일한 위법한 복제·전파 게시물의 검색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p>

현 행	개 정 안
	<p><u>제3조(시행 전 댓글 및 복제·전파물에 관한 경과 조치)</u> 제18조의2제10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 시행 전에 행하여진 언론보도 및 그에 대한 댓글 또는 그와 동일한 위법한 복제·전파 게시물에 관해서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으로 한다.</p>

제 2 장

언론중재법 및 공직선거법 개정 발의안

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법률로는 위원회의 설립 근거법인 언론중재법과 위원회 산하에 설치한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규정한 공직선거법이 있다.

언론중재법 개정 발의안은 9건이,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 발의안은 5건이 제19대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언론중재법 및 공직선거법 개정 발의안의 주요내용 및 그에 대한 위원회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언론중재법

가. 개정 발의안

발 의 자 (발의일)	주 요 내 용
김재윤 의원 등 20인 (2012. 7. 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재위원 위촉권자 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대통령 ● 중재위원 추천권자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관 : 법원행정처장 → 대법원장 - 전직 언론인 : 국회의장 - 기타 : 언론인단체 또는 시민단체 등(대통령령) ● 위원장 상임화 ● 중재위원 결격사유 강화

발 의 자 (발의일)	주 요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원 신분을 상실한 지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및 선거후보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결격 ● 중재위원 재위촉(부촉) - 법 시행일 후 개정규정에 따라 지체 없이 재위촉
최민희 의원 등 20인 (2012. 9.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재위원 위촉권자 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대통령 ● 중재위원 추천권자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관 : 법원행정처장 → 대법원장 - 전직 언론인 : 신문협회와 방송협회 - 기타 : 언론 관련 학회 또는 시민단체(대통령령) ● 위원장 대통령 임명 및 상임화 ● 중재위원 결격사유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원 신분을 상실한 지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및 선거후보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결격 ● 위원회 상담 및 교육의 근거조항 마련 ● 위원회 예산을 국가의 일반회계로 하며, 위원장은 「국가재정법」 상의 중앙 관서의 장으로 봄
정청래 의원 등 10인 (2012. 12.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제명 변경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론분쟁조정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언론중재위원회 → 언론분쟁조정위원회 - 중재부 → 조정부 - 중재위원 → 조정위원 ● 중재위원 구성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관이나 변호사 자격을 갖춘 중재위원을 정수의 5분의 2 이상에서 5분의 1 이상으로 함 - 시민단체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을 중재위원에 포함 ● 중재부장은 중재위원 중에서 호선 ● 중재위원 결격사유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로 등록된 자, 언론사에 재직 중이거나 언론사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언론인은 결격 ● 중재부 의결정족수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재부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기사삭제청구권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신문 홈페이지 및 인터넷뉴스서비스 홈페이지에 게재 또는 매개된 언론보도 등에 대해 기사삭제청구 가능 ● 정당한 사유 없이 당사자에게 병합된 다른 청구에 관한 권리포기 권유 불가 ● 중재결정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 ● 언론사등에 정정보도청구등을 하였으나 협의가 불성립된 경우 이를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조정불성립결정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함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원은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음

발 의 자 (발의일)	주 요 내 용
최민희 의원 등 25인 (2013. 3. 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백한 오보에 대한 정정보도 특례 조항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백히 사실과 다른 언론보도등으로 명예와 인격권을 침해당한 자는 위원회에 그 확인을 청구할 수 있고, 위원회는 3일 이내에 명백한 오보 여부를 판단하도록 함 - 위원회는 명백한 오보로 판단한 경우 해당 언론사등의 대표자에게 정정보도문을 명시하여 정정보도를 청구하고, 언론사등은 7일 이내 정정보도문을 발송하거나 게재하도록 함 ● 명백한 오보로 인한 정정보도문에 대한 매체특성별 세부기준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문 : 같은 지면, 같은 위치에 오보기사의 2분의 1 이상의 크기로 정정보도문을 게재 - 방송 : 같은 프로그램의 시작 전 1분 동안 정정보도문을 시작으로 게재하고 통상적인 속도로 읽을 것 - 잡지 등 정기간행물 : 목차가 게재되는 지면에 이어지는 1개 지면에 정정보도문을 게재 - 인터넷신문 및 뉴스통신 : 오보기사의 본문 상단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화면 상단 메뉴 바로 아래 정정보도문과 기술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게재 - 인터넷뉴스서비스 : 오보기사의 본문 상단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하고 해당 오보기사가 제목으로 게재된 바 있는 모든 공간에 정정보도문과 기술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게재
박창식 의원 등 10인 (2013. 6.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장 대통령 임명 및 상임화 ● 위원장은 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없으며,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음
정부 (2013. 6. 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재위원 결격사유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론사에 소속된 현직 언론인 → 언론사에 소속된 임직원 ● 중재위원 신분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와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함 ● 위원회 상담 및 교육의 근거조항 마련 ● 추후보도청구 기간 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사절차가 무죄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되었을 때에는 그 사실은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연장 ● 인터넷신문사업자에게도 정정보도청구등이 있을 경우 알림표시 의무 부여 ● 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조정신청이 있을 경우 알림표시 의무 부여 ● 조정 시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출석 의무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출석을 갈음하여 조정기일 전까지 답변서 또는 그 밖의 준비서면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이를 제출할 경우 출석한 것으로 봄 ● 알림표시 의무 미이행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이재영 의원 등 12인 (2015. 1.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 배열에 대해서도 시정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론보도등의 내용 또는 기사 배열에 의한 국가적 법익, 사회적 법익 또는 타인의 법익 침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여 필요한 경우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음

발 의 자 (발의일)	주 요 내 용
김한표 의원 등 10인 (2015. 3.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사삭제청구권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사삭제청구에는 언론사등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은 요하지 않으며,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정정보도청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
우윤근 의원 등 13인 (2015. 11. 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원 관할의 확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정보도청구등의 소에 대한 제1심 재판은 피고의 보통재판적 외에 「민사소송법」 제24조의2(개정안)에 따라 언론에 관한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지방법원의 합의부도 관할할 수 있도록 함

나. 위원회 의견

구 분	주 요 내 용
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백한 오보에 대한 정정보도 특례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 배열에 대한 시정 권고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 필요 • 인터넷 매체에 대한 제도 개선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사삭제청구 등을 포괄하는 정보통신망 상의 인격권에 기한 침해배제청구권 신설 - 복제기사 및 기사덧글로 인한 인격권 침해 사안에 대한 피해구제절차 마련

2. 공직선거법

가. 개정 발의안

발 의 자 (발의일)	주 요 내 용
교회선 의원 등 10인 (2012. 10. 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제재조치로 사과문 게재, 정정보도문 또는 반론보도문 게재, 경고결정문 게재, 주의사실 게재, 경고 또는 주의를 규정함
박기춘 의원 등 10인 (2013. 7.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선거기사심의위원회 및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를 통합한 '공정언론심의위원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하여 상시 운영하도록 함 • 공정언론심의위원회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각 1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3명, 방송·신문 및 인터넷 언론 종사자 각 2명, 방송사·방송학계·언론학계·대한변호사협회·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자를 포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 공정언론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는 사무처를 둬 • 공정언론심의위원회는 심의기준에 따라 선거보도의 공정성을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결과 선거보도의 내용이 심의기준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언론기관에 반론보도문 또는 경고문을 발송·게재하도록 하는 제재조치를 명함 • 정당 또는 후보자는 선거보도가 심의기준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정언론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공정언론심의위원회는 심의결과 선거보도가 심의기준

발 의 자 (발의일)	주 요 내 용
	<p>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언론기관에 반론보도문 또는 경고문을 발송·게재하도록 하는 제재조치를 명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왜곡된 선거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정당 또는 후보자는 그 보도의 공표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당 언론기관에 직접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으며 해당 언론기관은 해당 정당 또는 후보자와 협의한 후 청구를 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반론보도를 하도록 함 • 언론기관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당 또는 후보자는 공정언론심의위원회에 즉시 반론보도청구를 할 수 있으며, 공정언론심의위원회는 이를 24시간 이내에 심의·결정함
김태년 의원 등 11인 (2015. 6.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정요구권자 범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공정 보도에 대한 시정요구권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선거보도의 내용이 심의기준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후보자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제재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의기준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정보도문등 게재의 제재조치를 명할 수 있음. 현행 사과문 게재는 삭제 • 제재조치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재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언론사에 대하여는 언론사별로 1억원, 5천만원, 3천만원 또는 2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현행 벌칙은 삭제
백재현 의원 등 10인 (2015. 8.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재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과문 게재 부분을 공정보도의무를 위반하였다는 결정을 선거기사심의 위원회로부터 받았다는 사실의 공표로 개정함
신정훈 의원 등 10인 (2015. 9.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자 이의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론사의 불공정한 선거기사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정당 또는 후보자는 선거 기사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선거기사심의 위원회는 2일 이내에 심의하여 결정하도록 함

나. 위원회 의견

구 분	주 요 내 용
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제재조치의 다양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과문 게재는 위헌 소지가 있으므로 삭제될 필요가 있고, 대신 권리 침해사실 게재, 경고결정문 게재, 주의결정문 게재 등 다양한 결정유형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선거기사 심의기구가 중앙선관위로 통합될 경우 국가기관이 언론보도를 심의하고 규제하게 돼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상설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의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효율성, 지속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선거기사심의 위원회를 상시 운영해야 함